

의안번호	2210094
의 퇴 인	맹성규의원
회 답 일	2025.5.9.
추계번호	25B2537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
1	안 제49조의11 신설 (공공임대주택의 경로당 설치 특례)	공공주택사업자는 고령자인 임차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1층에 있는 일부 세대를 「주택법」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음.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	재량규정 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49조의11 신설 (공공임대주택의 경로당 설치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고령자인 임차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1층 일부 세대를 「주택법」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경로당으로 전환되는 세대에 대한 시설개선 등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¹⁾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1) 공공임대주택 건설, 매입 또는 임차를 위한 사업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주택도시기금으로 조달되는 구조로,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비에는 경로당과 같은 복리시설 건설비용도 포함되나, 개정안에서는 1층 일부 세대에 경로당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사업비 외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임

- 그러나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1층 일부 세대를 선택적으로 경로당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1층 세대의 경로당 전환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경로당 설치 수요, 해당 세대별 시설개선 단가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산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이러한 기초 정보가 불확정적이므로 관련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－ 참고로, 정부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2025년 기준 평당 10,436천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(용자 및 출자)하고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